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6호의5서식] <개정 2018. 12. 27.>

공고 제2023-34호

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말소 공고

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말소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성명 (법인명)	생 년 월 일 (법인등록번호)	처분결과 및 사유
이재선	1947.06.27.	- 경영체 등록 정보(단독 경영주 사망) 확인에 따른 등록정보 말소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
강영식	1948.01.31.	- 경영체 등록 정보(단독 경영주 사망) 확인에 따른 등록정보 말소 -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2 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정보 직권 말소

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정보 말소 공고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.

2023년 5월 15일

중부지방산림청장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